

예산총칙

201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60,281,818	16,808,455
일반회계	516,953,002	15,508,590
특별회계	43,328,816	1,299,864
공기업특별회계	36,065,173	1,081,955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618,868	618,566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5,446,305	463,389
기타특별회계	7,263,643	217,909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848,564	55,457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2,762,547	82,876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367,102	41,013
신정지구개발사업 특별회계	882,221	26,467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03,209	12,09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5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507,821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2,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 한다.